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문서번호 법무 11010-1363

시행일자 1995. 8. 30.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32		
법제계장	32		
기안	이종범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 발령

1.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1부. 끝.

제 609 호

(제2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609 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공일 35210-603 ('95. 8. 24)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에규 제 609 호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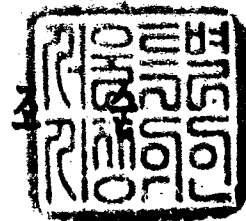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발간계획"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11인"을 "13인"으로, "6인"을 "8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홍보물 시안"을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단일 홍보물 시안"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심의)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홍보물에 대하여 문안, 색상, 레이아웃, 분량, 내용의 타당성·적합성, 시의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② 주관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p>제2조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p> <p>① 홍보물의 발간계획·제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위원은 공보1담당관, 시장이 지명하는 본청 과장 3인 및 시장이 위촉하는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가 6인 이내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 (홍보물제작심의 신청 등)</p> <p>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본청 주관과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홍보물 시안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홍보물제작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2조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p> <p>① 홍보물의 제작.....</p> <p>② 13인</p> <p>..... 8인</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홍보물제작심의 신청 등)</p> <p>①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단일 홍보물 시안.....</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 (심의)</p> <p>①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홍보물에 대하여 문안, 색상, 레이아웃, 분량, 내용의 타당성·적합성, 시의 적절성 등을 심의한다.</p> <p>② 주관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p>
(신 설)	

서울특별시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중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홍보물제작 심의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을 증원하고, 시정홍보물의 심의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별하여 심의 요청하게 함으로써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발간계획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외부 심의위원 증원(안 제2조)
 - 외부위원(전문가)을 2인 증원(6인 이내에서 → 8인 이내로)함
- 다.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 제5조의2)
 - 심의신청시 첨부하는 홍보물시안은 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단일 시안으로 규정
 -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문안, 색상, 레이아웃, 내용의 타당성·적합성, 시의적절성 등으로 규정
 -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당해 홍보물제작에 반영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음(보상금 중 홍보기법개발 및 교육비 활용)
- 다. 합의 : 별도의 합의 필요 없음
- 라.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